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점검 의무화〉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2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 법률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7. 03.
3. 회 부 일 : 2024. 07.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나 기타 난폭운전의 금지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 아니라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가중처벌에 대한 악용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u>단속을 위하여</u>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u>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u> 한다. ⑤ (생략)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u> -- ----- -- <u>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u>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어린이에 대해 특별한 교통안전 보호를 위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정 안전조치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노려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이 장난이나 놀이로 차량에 접근하는 일 등 해당 법률의 악
용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
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민식이법’의 악용을 방지하
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
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스쿨존 차 농락 초등생들…‘민식이법 놀이’ 아찔, 국민일보(2021.07.14.)

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현재도 「아동복지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비교할 때 교통사고 후 증거수집 목적으로의 CCTV 설치·운용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³⁾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영상처리기기 설치 현황 ('24. 6월 기준)>

구분	무인단속용 장비				CCTV
	계	속도·신호 위반 검용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2021	7,963	2,934	1,591	3,438	18,439
2022	13,196	4,968	3,455	4,773	19,696
2023	16,639	6,599	4,657	5,383	20,759
2024.6.	17,368	7,086	4,838	5,444	20,973

※ 자료: 경찰청

3)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⁴⁾상의 취지를 봤을 때 해당 도로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과도한 감시나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경찰청은 현재도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참고로 재원 부담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21억 500만원(연평균 44억 2,100만원)으로 예상됨.

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⑧ (생략)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